

# I 상생결제시스템



## 도입배경

-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납품대금 결제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화도모
- 중소기업 (하위기업)으로 상생결제 확산을 통한 불공정 거래 관계개선으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국정과제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 약속어음 대체수단 마련

### 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 (공정위·중기부, '19.12.16)

- ②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⑥ 상생결제 활성화
- 2차 협력사 이하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
- 339개 공공기관, 404개 지방공기업의 대금결제 시스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공공부분의 상생결제 이용 활성화
  - 상생결제 도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비중 강화, 지방공기업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신규 반영
-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하여 안정성 확보

### ② 기업 간 결제환경 약화

- **하도급 대금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
  -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
  -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카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원사업자 대금지급시 하도급 업체 현금지급 비율 : '16년 57.5% → '17년 62.3% → '18년 62.5% → '19년 65.5%

## 상생결제 대금지급 프로세스



- 1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에 별도 보관하여 2차이하에게 직접지급하는 구조
- 상환청구권이 없고, 2~N차 거래기업도 최상위 구매기업 신용도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음 할인과 차이

# II 상생결제 의무화·평가



## 상생협력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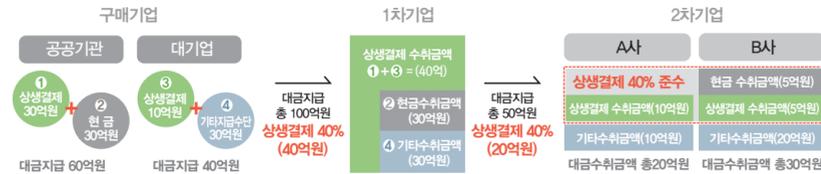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06.03.03 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동반성장 달성,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목적을 바탕으로 제정

'18.02.28	상생결제 의무화 등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18.03.20	공포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수취시 하위사로 상생결제 의무화)
'18.09.21	상생결제 의무화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시행

## 상생결제 의무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거래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상생결제 의무지급 예시 (1차기업 기준)



- 구매기업(공공기관+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수취금액 (100억원)중 상생결제 금액이 40%(40억원) 차지
- 1차기업은 2차(하위)거래기업에게 지급할 총 50억원중 40%(20억원) 이상을 현금(B사 5억원) 또는 상생결제(A사 10억원, B사 5억원)로 지급하여야 함

## 정부 동반성장 실적평가 항목

### • 평가지표 : 결제환경 개선

①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대금지급(대금지급 비율) 실적

평가년도 상생결제 지급액

비율(%) =	공시된 최근 3개년 매출원가의 평균(ALO기준)	비율	6%이상	4.5%이상	3%이상	1.5%이상	1.5%미만
점수		점수	2.0	1.6	1.2	0.8	0.4

② 활용실적 비율

비율(%) =  $\frac{\text{1차협력(거래)기업} \rightarrow \text{2차이하 상생결제 금액}}{\text{공공기관} \rightarrow \text{1차 협력(거래)기업 상생결제 금액}}$

비율	4.5%이상	3.5%이상	2.5%이상	1.5%이상	1.5%미만
점수	①점수×130%	①점수×115%	①점수×100%	①점수×75%	①점수×50%

③ 상생결제제도 활용기업 증가

- 상생결제 참여 1차협력기업 증가정도

기업수	4	3	2	1	전년동일
점수	0.5	0.4	0.3	0.2	0.1

- 상생결제 참여 2차이하 협력기업 증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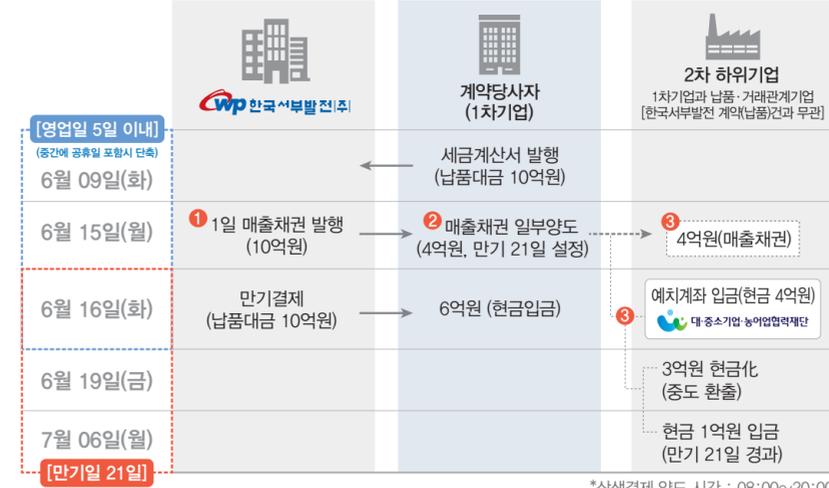
기업수	4	3	2	1	전년동일
점수	0.5	0.4	0.3	0.2	0.1

### ④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확대 등 협력(거래)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4점, 비계량)

# III 상생결제 적용사례



## 상생결제 프로세스



\*상생결제 양도 시간 : 08:00~20:00

환 출 이 자	3억원(중도환) x 0.0204(거래) x 17/365일(일자) = 285,041원
장 려 금	1억원(만기) x 0.01(예금이자) x 21/365일(일자) = 57,534원
법인(소득세) 감면 (중소·중간기업 적용)	4억원(매출채권 양도) x 0.1%(이율) = 400,000원 { 15일 이내인 경우 0.2% } *법인(소득세) 감면 시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수수료	3억원 x 0.05 x 17/365일 = 698,630원
(상생결제) 수수료	3억원 x 0.0204 x 17/365일 = 285,041원
법인(소득세) 감면	2차 → 3차 매출채권 양도금액
대 상	하위기업에게 수취금액의 10%이상 매출채권을 양도한 1차 ~ N차기업
지 원 내 역	계약·선금·하차 이행증권 및 손해배상증권 보험료지원 (연 3회, 500만원 한도)

금리 ('20.3.23 고시기준)  
▶ 한국서부발전 : 2.04%  
▶ KORIBOR + 1.18%  
▶ 대기업 : 3%  
▶ 중소기업 : 5~10%

## 상생결제 우수기업 포상금 실적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 계
기업수	(주)한성더스트링 등 5개사	에이스기전(주) 등 22개사	(주)에네스지 등 24개사	에스엠에이치(주) 등 70개사	121개사
포상금	19,705,120원	33,632,190원	65,007,340원	88,578,370원	206,923,020원

\*기업별 Type① 보증보험료 최대 500만원, Type② 하위기업 양도 비율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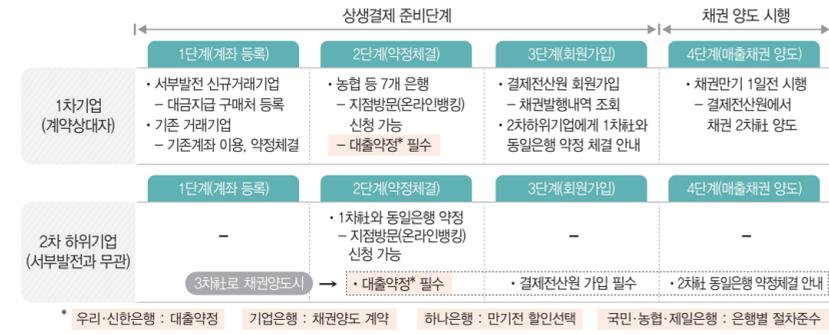
# IV 상생결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회계 절차



## 기업별 상생결제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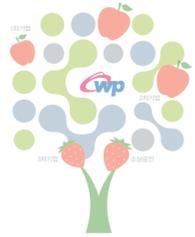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절차 / (문의 02-703-8881)



## 상생결제 실적

구분	지급 총액 (SMPP기준)	서부발전-계약상대자(1차환)		1차환 → 2차환		2차환 → 3차환			
		발행	수취기업	채권양도	양도기업 (수취기업)	수취 기간	채권양도	양도기업 (수취기업)	수취 기간
~'16년도	3,950억	384건 (1,465억)	139개사	51건 (67억원)	7개사 (23개사)	5.5일	2건 (0.24억원)	2사 (2사)	2.5일
'17년도	4,994억	1,554건 (3,074억)	334개사	243건 (127억원)	40사 (92사)	5.9일	7건 (0.22억원)	2사 (3사)	3.4일
'18년도	6,038억	2,214건 (3,784억)	414개사	601건 (158억)	57사 (129사)	3.6일	8건 (0.17억)	3사 (4사)	1.8일
'19년도	4,961억	2,189건 (3,221억)	452개사	624건 (174억)	94사 (195사)	2.2일	22건 (1.6억)	2사 (2사)	3.3일



「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b>Wp 한국서부발전주</b>	상생결제 주관, 협력기업 홍보
본사 / 국정과제추진실(중소기업지원부)	사업소 /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정문용 부장 : 041-400-1430	태안발전본부(품질관리부) : 070-5007-3923
남동균 차장 : 041-400-1431	평택 발전본부(기계부) : 070-5007-5733
정재윤 차장 : 041-400-1432	서인천발전본부(전기부) : 070-5007-7233
국진영 차장 : 041-400-1433	군산 발전본부(기계부) : 070-5007-8221
박윤수 대리 : 041-400-1434	
김세훈 대리 : 041-400-1435	

<b>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b>	상생결제 총괄기관
문의처 : 02-368-8450	
상생결제시스템 대표번호 : 1677-0833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winwinpay.or.kr	

<b>상생결제 협약 은행</b> ('20년 01월 기준)	협력기업과 약정		
<b>NH농협은행</b>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nh.kefci.com
<b>KB국민은행</b>	K B 상 생 결 제 론	1566-9944	kb.kefci.com
<b>우리은행</b>	우리상생파트너론	1588-5000	woori.kefci.com
<b>신한은행</b>	신한 동반 성장론	1544-8008	shinhan.kefci.com
<b>IBK기업은행</b>	IBK 상 생 결 제 론	1566-2566	ibk.kefci.com
<b>KEB하나은행</b>	KEB하나동반성장론	1588-3555	hana.kefci.com
<b>Standard Chartered SC제일은행</b>	S C 상 생 결 제 론	1588-1599	sc.kefci.com

<b>KEFCI [주] 결제 전산원</b>	상생결제시스템 문의
기업간 대금결제를 전자매출채권의 신용공여에 의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기업간 대금결제 과정 안전·투명·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 도모하는 기관	
02-703-8881	www.kefci.com

## V 상생결제 추진경위



### 상생결제 특징

- 1 대금지급의 안정성**
  - 납품대금을 원청사를 거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보관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여 대금 지급의 안정성 보장
  - 상환청구권이 없어 상위 기업이 부도가 나도 하위 협력사는 납품대금의 안정성 보장
- 2 현금유동성 확대**
  - 공공기관(발주기관) - 1차기업(원청사) 간 현금지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2~N차 기업은 만기일 전 현금 조달 시 공공기관(발주기관)의 신용도로 자금 조달 가능
- 3 간편한 구축**
  - 은행 상품과 ERP 간 연계 작업 이외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 및 사용비는 없으며, 상생결제 상품 협약 및 ERP 도입까지 약 1개월(최대 2~3개월) 소요
- 4 대금 지급 모니터링**
  - 현금과 달리 대금흐름 추적이 가능하며, 2차 이하 기업까지 상생결제를 통한 결제 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5 모든 결제 활용가능**
  - 사업자 간 거래이면 모든 결제에 활용가능하며, 공사계약 건의 경우 하도급사의 자재, 장비임대, 노무비까지도 상생결제로 지급 가능

### 추진경위

'15년 11월	• 상생결제시스템 구축·도입협약[서부발전 등 15개 공공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5년 12월	• 주거래은행(농협)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협약
'15년 12월	• 사내 ERP시스템 개선(매출채권 발행 기능 추가)
'16년 06월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2차 하위기업 대금지급(공공기관 최초)
'16년 06월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협약(국민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7월), 기업은행(12월))
'17년 09월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협약(하나은행)
'19년 07월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협약(SC제일은행)
'19년 10월	• 상생결제 활용 대금지급 누적 1조원 달성
'19년 11월	• 협력기업(금화PSC) 상생결제 우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표창

### 용어정리

- **구매기업**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기업(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구매기업은 은행과 발행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한도 내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매출채권(상생매출채권)** : 협력기업 중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하위기업이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에 준하여 선금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 : '은행'과 2차기업간의 할인거래와 관련하여 1차기업이 만기도래한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2차기업에게 할인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예치계좌** :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결제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써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를 위한 입금과 출금, '협력기업' 별 이자수익을 배분 입금을 위한 출금만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 **환출일자** : 1차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잔액을 가지고 2차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2차 협력기업이 이를 할인한 경우, 동일하게 2~N차 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이 할인 받은 대출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상환 처리합니다. 이 때 남은 대출 기간에 대하여 환출되는 이자를 1~N차협력기업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환출이자라 합니다.

## VI 매출채권 발행(양도) 시점



	Wp 한국서부발전주 (공공기관)	계약상대자 1차기업	2~N차 하위기업
만기결제일	영업일 5일	기업별 결제 관행에 준하여 만기결제일 설정 (1~60일 이내)	기업별 결제 관행에 준하여 만기결제일 설정(1~60일 이내)
매출채권 발행(양도) 시점	만기결제일 하루 전 1일 매출채권 발행	서부발전(공공기관)에서 매출채권을 받은 당일에 만기결제일 설정하여 매출채권 일부양도	상위기업이 매출채권을 양도한 날로부터 만기결제일 하루전까지 하위기업은 매출채권 일부양도
매출채권 발행(양도) 금액	대금지급 총액	수취금액 범위내 최소 10만원 (농협·우리·SC제일은행), 100만원 (국민, 신한, 기업, 하나은행)부터 가능	수취금액 범위내

\*매출채권 발행기업(서부발전)과 수취기업(1차기업, 2~N차 하위기업) 동일한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

### 대금결제일(만기일) 관련법

-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중소·중견기업이 대금결제 시 현금성 결제금액의 비율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으며 약속어음 결제금액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 상생결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15일 이내 지급 : 2/1,000, 60일 이내 지급 : 1/1,00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세액의 1/10한도)
- 2. 영업일 5일 이내 대금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 3. 매출채권 양도시 만기결제일 15일 이내 설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43조의 2, 용역27조의2, 물품22조의2)**  
계약상대자는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량,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매출채권 양도시 만기결제일 60일 이내 설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기간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일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서부발전**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계개선으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 상생결제시스템

Guide book(Ver. 03)

